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김 순 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4-26
----------	---------

발의연월일 : 2024. 2. 21.

발 의 자 : 김순옥, 정재봉, 김희동,  
김현진, 고찬양, 강선영,  
김성한, 최세진, 조기만

## 1. 제안이유

가족돌봄을 부담하는 청소년·청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고립되지 않고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및 안 제5조)

라.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사업을 명시함(안 제6조)

마. 효율적인 정책 시행을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 및 협력체계 구축을 정함(안 제7조 및 안 제8조)

바. 중복지원의 제한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3조, 「민법」 제779조

나. 협조부서 : 복지정책과

다. 입법예고 : 2024. 2. 23. ~ 3. 4.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13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
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
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
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
4.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
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
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

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전문개정 2005. 3. 31.]